

문화융성위원회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문화융성위원회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의 범국민적 참여와 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에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운영 원칙)

양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며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협력 분야)

모든 당사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한다.

1.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등이 동참하는 ‘문화가 있는 날’ 확산
2.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문화가 있는 날’ 정례화를 위한 자율프로그램 시행 독려
3. 기관 홈페이지, 기관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문화가 있는 날’ 홍보
4. 연합단체 기관 근무자 ‘문화가 있는 날’ 정시퇴근 독려
5.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 분야

제4조 (기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각종 기밀정보와 공동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밀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시키지 않으며, 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5조 (효력)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일 전 서면으로 협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해지)

1. 일방은 다른 일방이 본 협약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해지할 수 있다.
2. 본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당사자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등)

본 협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 이후의 협력 사항 및 활동내역 등의 홍보를 할 경우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며, 상호 홍보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제8조 (법적구속력)

본 협약은 계약 당사자 간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4조 기밀유지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9조 (수정 및 변경)

본 협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016년 2월 23일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표 재 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정 광 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마 미 정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 경 자